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빈집에 침입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으로 상향〉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12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12.
3. 회부연월일 : 2025.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 행위가 스토킹 등 행위의 구성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없어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취약성이 있음.

이에 경범죄 행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0조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의 처벌 강화

개정안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 중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빈집 등에의 침입, 흥기의 은닉 휴대, 폭행 등 예비, 음주 소란 등, 위험한 불씨 사용, 무단 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지속적 괴롭힘, 업무방해 등 9개 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 ----- -----.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삭 제>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흥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	<삭 제>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	
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	
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현행	개정안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삭 제>
4. ~ 19. (생략)	4. ~ 19. (현행과 같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삭 제>
21. (생략)	21. (현행과 같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삭 제>
23. ~ 36. (생략)	23. ~ 36. (현행과 같음)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삭 제>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삭 제>

현행	개정안
<u>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u> <u>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u> <u>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u> <u>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u> 39·40. (생략)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 <u>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u> <u>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u> <u>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u> <u>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u> <u>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생략) 3. (업무방해) <u>못된 장난 등으로</u> <u>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u> <u>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u> 4. (생략) <u><신설></u> <u><신설></u>	39·40. (현행과 같음) <u><삭제></u> ② ----- ----- -----.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서의 침입) 다른 사람 <u>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u> <u>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u> <u>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u> <u>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u>

현행	개정안
<u><신 설></u>	2. (홍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u><신 설></u>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u><신 설></u>	4.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u><신 설></u>	5.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u><신 설></u>	6.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

현행	개정안
<신설>	<u>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u>
<신설>	7. <u>(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u>
<신설>	8. <u>(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u>
<신설>	9. <u>(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을 통해 처벌수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범죄 행위들의 연혁을 살펴보면, 빈집 등에의 침입, 흥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음주 소란 등, 위험한 불씨 사용, 업무방해는 「경범죄 처벌법」이 제정된 1954년부터 규정되었고, 무단 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은 1973년 시행된 법률부터 규정되었으며, 지속적 괴롭힘은 2013년부터 규정되었음.

[개정 대상 경범죄 행위의 연혁]

현행법률	「경범죄 처벌법」 연혁
제3조①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1954. 4. 21. 시행 (법률 제316호) 제1조 1.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거주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내에 잠복한 자
제3조① 2. (흥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1954. 4. 21. 시행 (법률 제316호) 제1조 2. 정당한 이유없이 도검, 철봉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제3조①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1954. 4. 21. 시행 (법률 제316호) 제1조 4.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할 것을 공모한 자 중 그 예비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 당해 예비행위의 공모자
제3조①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1954. 4. 21. 시행 (법률 제316호) 제1조 28. 공공의 장소에서 다수인에 대하여 난폭한 언동으로써 공중을 소란하게 한 자 1973. 3. 11. 시행(법률 제2504호) 제1조 28. 공공의 장소 또는 시설 기타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난폭한 언동으로써 공중을 소란하게 하거나, 술에 만취되어 이유없이 타인에게 주정을 한 자
제3조①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1954. 4. 21. 시행 (법률 제316호) 제1조 30.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 삼림 기타 불붙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는 휘발유 기타 인화하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한 자
제3조①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1973. 3. 11. 시행 법률 제2504호 제1조 53.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들어간 자
제3조①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1973. 3. 11. 시행 법률 제2504호 제1조 54.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또는 화약류 기타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조작하거나 또는 장난한 자
제3조①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2013. 3. 22. 시행 법률 제11401호 제3조①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제3조②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954. 4. 21. 시행 (법률 제316호) 제1조 12. 타인의 업무에 대하여 악희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개정 대상이 된 9개 경범죄가 규정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해당 경범죄 행위들이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정 대상이 된 9개 경범죄의 중대성도 높아지고 있음.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에 규정된 지속적 괴롭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9개의 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해당 행위들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헌법재판소는 「경범죄 처벌법」은 보충적·도덕적 성격에 따라 형법상 범죄행위보다 불법성이 낮지만 사회질서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법¹⁾이라고 판시한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정 대상이 된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지속적 괴롭힘 등의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에서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속적 괴롭힘과 스토킹 범죄 요건 비교]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범죄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임.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상대방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임.

1)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426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개정 대상인 9개의 행위에 대한 처벌현황을 살펴보면, 빈집 등에의 침입은 955건, 흥기의 은닉휴대는 1,300건, 폭행 등 예비는 203건, 음주소란 등은 64,412건, 위험한 불씨 사용은 2,910건, 무단출입은 1,895건, 총포 등 조작장난은 21건, 지속적 괴롭힘은 1,441건, 업무방해는 6,772건 처벌이 있었음.

<빈집 등에의 침입(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처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범칙금	156	148	155	130	146	735
벌금	30	45	56	42	45	218
구류	0	0	0	0	0	0
과료	0	0	0	1	1	2
합계	186	193	211	173	192	955

(자료: 경찰청)

<흥기의 은닉휴대(법 제3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인한 처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범칙금	147	143	150	153	174	767
벌금	109	114	125	86	99	533
구류	0	0	0	0	0	0
과료	0	0	0	0	0	0
합계	256	257	275	239	273	1,300

(자료: 경찰청)

<폭행 등 예비(법 제3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인한 처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범칙금	24	16	20	13	15	88
벌금	36	31	22	18	8	115
구류	0	0	0	0	0	0
과료	0	0	0	0	0	0
합계	60	47	42	31	23	203

(자료: 경찰청)

<음주소란 등(법 제3조제1항제20호) 위반으로 인한 처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범칙금	8,651	7,642	6,243	6,160	10,736	39,432
벌금	6,452	6,053	5,138	3,794	3,496	24,933
구류	1	0	1	2	6	10
과료	17	6	5	3	6	37
합계	15,121	13,701	11,387	9,959	14,244	64,412

(자료: 경찰청)

<위험한 불씨 사용(법 제3조제1항제22호) 위반으로 인한 처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범칙금	403	390	379	484	611	2,267
벌금	114	125	124	127	149	639
구류	0	0	0	0	0	0
과료	1	1	0	2	0	4
합계	518	516	503	613	760	2,910

(자료: 경찰청)

<무단 출입(법 제3조제1항제37호) 위반으로 인한 처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범칙금	281	296	166	165	426	1,334
벌금	127	118	91	74	71	481
구류	1	0	0	0	0	1
과료	20	13	16	11	19	79
합계	429	427	273	250	516	1,895

(자료: 경찰청)

<총포 등 조작장난(법 제3조제1항제38호) 위반으로 인한 처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범칙금	1	3	1	6	7	18
벌금	1	0	0	1	1	3
구류	0	0	0	0	0	0
과료	0	0	0	0	0	0
합계	2	3	1	7	8	21

(자료: 경찰청)

<지속적 괴롭힘(법 제3조제1항제41호) 위반으로 인한 처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범칙금	338	351	68	56	79	892
벌금	135	164	117	69	63	548
구류	0	1	0	0	0	1
과료	0	0	0	0	0	0
합계	473	516	185	125	142	1,441

(자료: 경찰청)

<업무방해(법 제3조제2항제3호) 위반으로 인한 처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범칙금	636	536	631	737	1,191	3,731
벌금	574	530	628	614	686	3,032
구류	0	0	0	4	2	6
과료	1	0	0	0	2	3
합계	1,211	1,066	1,259	1,355	1,881	6,772

(자료: 경찰청)

참고로, 경찰청은 경미범죄가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개정안과 같이 벌금 등을 상향함으로써 재범 억제 및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임. 다만, 처벌 상향 대상 행위(9개)와 여타 경미 범죄와의 형평성 비교 및 상향의 수준(10·20→30만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마련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상습범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습범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현행 「형법」 제116조의2제2항, 제203조, 제246조제2항²⁾ 등이 있음.

2)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을 통해 상습범을 가중 처벌함으로써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헌법재판소는 「경범죄 처벌법」은 보충적·도덕적 성격에 따라 형법상 범죄행위보다 불법성이 낮지만 사회질서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고 판시한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① 경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과 ② 경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를 일부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질서 유지와 치안확보를 위해 경미한 범죄사범 처벌을 위해 제정(1954년 4월)되었으며, 불법성이 낮지만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한 예방적·보충적·도덕적 성격의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습 위반 행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 적용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참고 자료 1〉

가. 최근 3년(2023~2025) 간 스토킹 신고건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까지
총계	31,824건	31,947건	32,845건

자료: 경찰청

나. 스토킹 관련 최근 3년간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³⁾ 건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총계	4,046	4,610	6,007

※ 2025년도 통계는 확정 전으로 추후 보정작업 시 변동 가능

자료: 경찰청

다.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후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⁴⁾한 긴급응급 조치 사후승인 건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총계	3,839건	4,413건	5,706건

자료: 경찰청

-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후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에 따라 법원이
사후승인⁵⁾한 건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총계	3,724건	4,330건	5,616건

자료: 경찰청

마. 경찰관이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⁶⁾한 건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총계	10,130건	11,775건	11,151건

자료: 경찰청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⑦ (생략)

〈참고 자료 2〉

범칙금 부과 대상 범칙행위 : 44개

(단위 : 만 원)

범칙행위	1차	2차	3차	범칙행위	1차	2차	3차
제3조 제1항(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1. 빈집 등에의 침입	8	9.6	10	- 구걸로 타인에 불편 야기	5	6	7.5
2. 흥기의 은닉휴대	8	9.6	10	19. 불안감 조성	5	6	7.5
3. 폭행 등 예비	8	9.6	10	20. 음주소란 등	5	6	7.5
4. 삭제(거짓신고, 3조3항으로 이동)				21. 인근소란 등	3	3.6	5.5
5. 시체 현장변경 등	8	9.6	10	22. 위험한 불씨 사용	8	9.6	10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8	9.6	10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3	3.6	4.5
7. 관명사칭 등	8	9.6	10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5	6	7.5
8. 물품강매·호객행위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5	6	7.5
- 억지로 청하는 행위	8	9.6	10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떠들썩하게 부른 행위	5	6	7.5	-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5	6	7.5
9. 광고물 무단부착				- 동물을 시켜 타인에 위해	8	9.6	10
- 타인의 간판 등 훼손	8	9.6	10	27. 무단소등	5	6	7.5
- 단순 부착, 뿌리는 행위	5	6	7.5	28.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	6	7.5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8	9.6	10	29. 공무원 원조불응	5	6	7
11. 쓰레기등 투기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8	9.6	10
- 죽은 짐승, 쓰레기 등 투기	5	6	7.5	31. 미신요법	2	2.4	3
- 담배꽂초, 껌 등 투기	3	3.6	4.5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3	3.6	4.5
12. 노상방뇨 등				33. 과다노출	5	6	7.5
- 대소변 행위 등	5	6	7.5	34. 지문채취 불응	5	6	7.5
- 침뱉는 행위	3	3.6	4.5	35. 자릿세 징수 등	8	9.6	10
13. 의식방해	8	9.6	10	36. 행렬방해	5	6	7.5
14. 단체가입 강요	5	6	7.5	37. 무단 출입	2	2.4	3
15. 자연훼손	5	6	7.5	38. 총포 등 조작장난	8	9.6	10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8	9.6	10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5	6	7.5
17. 물길의 흐름 방해	2	2.4	3	40. 장난전화 등	8	9.6	10
18. 구걸행위 등				41. 지속적 괴롭힘	8	9.6	10
- 타인에게 구걸시켜 이익 편취	8	9.6	10				

제3조 제2항(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1. 출판물의 부당게재	16	19.2	20	3. 업무방해	16	19.2	20
2. 거짓 광고	16	19.2	20	4. 암표매매	16	19.2	20

제3조 제3항(60만원 이하 벌금)							
1. 관공서 주취소란				1. 2. 거짓신고			

※ 노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개정안에 따른 개정대상 항목임